

2021년 우수중소기업 증시상장 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

경기도 내 우수중소기업의 증권시장 상장지원을 통해 활발한 투자활동을 촉진하여 국내외 우량기업으로 성장 토대를 마련하고자 수행하는 2021년 우수중소기업 증시상장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3월
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

1 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도내 우수중소기업의 증권시장 상장지원을 통해 활발한 투자활동을 촉진하여 국내외 우량기업으로 성장 토대 마련
- 사업기간 : 2021년 1월 ~ 11월
- 모집대상 : 증시상장을 희망하거나 준비 중인 도내 중소기업

신청 및 지원제외 업종

금융 및 보험업, 부동산업, 숙박 및 음식점업, 무도장 운영업,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, 기타 gambling 및 베팅업, 기타 개인 서비스업

- 지원규모 : (컨설팅) 10개사, (상장비용 지원) 6개사
- * 컨설팅 및 상장비용 지원 중 택 1하여 신청

2 컨설팅 지원

- 지원대상 : 향후 2년 이내 상장계획이 있는 도내 중소기업
- 지원규모 : 10개사(1개사 당 최대 5회까지 컨설팅 지원)
 - 300,000원(전문가 수당, 1회) × 5회 = 1,500,000원
 - * 컨설턴트에 대한 전문가 수당은 진흥원에서 지출/부담하며, 기업 부담금은 없음.
- 지원내용 : 상장전문가의 1:1 컨설팅
 - 코스닥, 코넥스 상장요건 및 절차 컨설팅(상장 소요기간, 비용, 실무절차 등)
 - 상장요건 기준 부합 여부 점검 및 기업진단
 - 상장 로드맵 및 전략 수립 등

○ 지원시 유의사항

- 컨설턴트는 선정 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위촉한 전문가 그룹을 활용하여 매칭, 지원할 예정이나, 기업에서 원하는 별도의 컨설턴트가 있을 경우 신청서에 기재 요망(신규 컨설턴트는 자격검토후 승인)

* 신규컨설턴트 상시 모집중(문의 031-259-6112)

3] 상장비용 지원

- 지원대상 : 상장요건을 충족한 도내 기업 중, 상장절차를 밟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향후 1년 내 상장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

- 지원규모 : 총 6개사

- 지원금액 : 상장비용의 70%지원(최대 2,000만원 이내, 부가세 지원제외)

* 2021년 사업기간(1~11월)내 선정일前 증시상장관련 지출비용은 소급하여 신청가능

- 지원 가능한 상장비용

- 상장 사전준비를 위한 내부회계시스템 및 정관정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
- 상장심사 수수료 (코스닥 시장 100만원, 코넥스 시장 없음)
-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경우 기술평가 소요 비용
- 대표주관회사(증권회사 등) 수수료 (일반적으로 공모자금의 3~4% 수준)

○ 지원시 유의사항

- 타기관 증시상장비용 지원사업 관련 지원금을 받았거나 예정인 기업은 **중복 지원 불가**(컨설팅은 중복 신청 가능)

4] 신청 및 접수

- 신청기간 : 2021. 03. 24(수) ~ 04. 30(금) 17시限

- 신청방법 : 이지비즈 웹사이트(www.egbiz.or.kr)에서 온라인 신청

* 사업계획서 등 지원서식의 증빙자료는 체크리스트 목록순서로 압축하여 제출바람(ex.신청기업명_증시상장.zip).

* 첨부파일 개당 업로드 최대용량은 10MB로 용량이 클 경우 첨부파일을 나눠서 제출요망

- 제출서류 :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, 사업자등록증명, 최근 3개년 재무제표, 개인 정보 이용·수집에 관한 동의서 등(붙임의 신청서 체크리스트 必참조)

* 필요시 추가 또는 보완서류 등 요청 가능하며, 미제출시 실제 보유와 상관없이 불인정함.

- 문의처 :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 (Tel. 031-259-6112)

5] 지원사업 선정기준

- 증시상장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평가후 평가점수 60점 이상 득점기업 중 최고득점 순으로 분야별 지원규모내에서 선정
- 매출규모 및 성장세, 부채비율, 기술수준, 지원필요성 및 기업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- 지원 우대사항
 - 경기도 우수인증서 보유기업 가점 부여
 - * 경기도外 정부기관 및 타 유관기관 인증 제외, 인증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제외
 - 여성기업 확인서 또는 장애인 기업 확인서 보유 기업 가점 부여
 - 2019년, 2020년 증시상장 컨설팅 참여기업 가점 부여

◀위법·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▶

- 위법·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[지방재정법,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 등]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.
 - 위법·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
 - 형사고발(문서의 위·변조, 사기, 업무방해, 금품·향응제공 등 위법·부당행위 수반 시)
 - 향후 지원배제(금액과 횟수, 수법 등에 따라 5년 이내에서 지원 배제)
 -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(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)